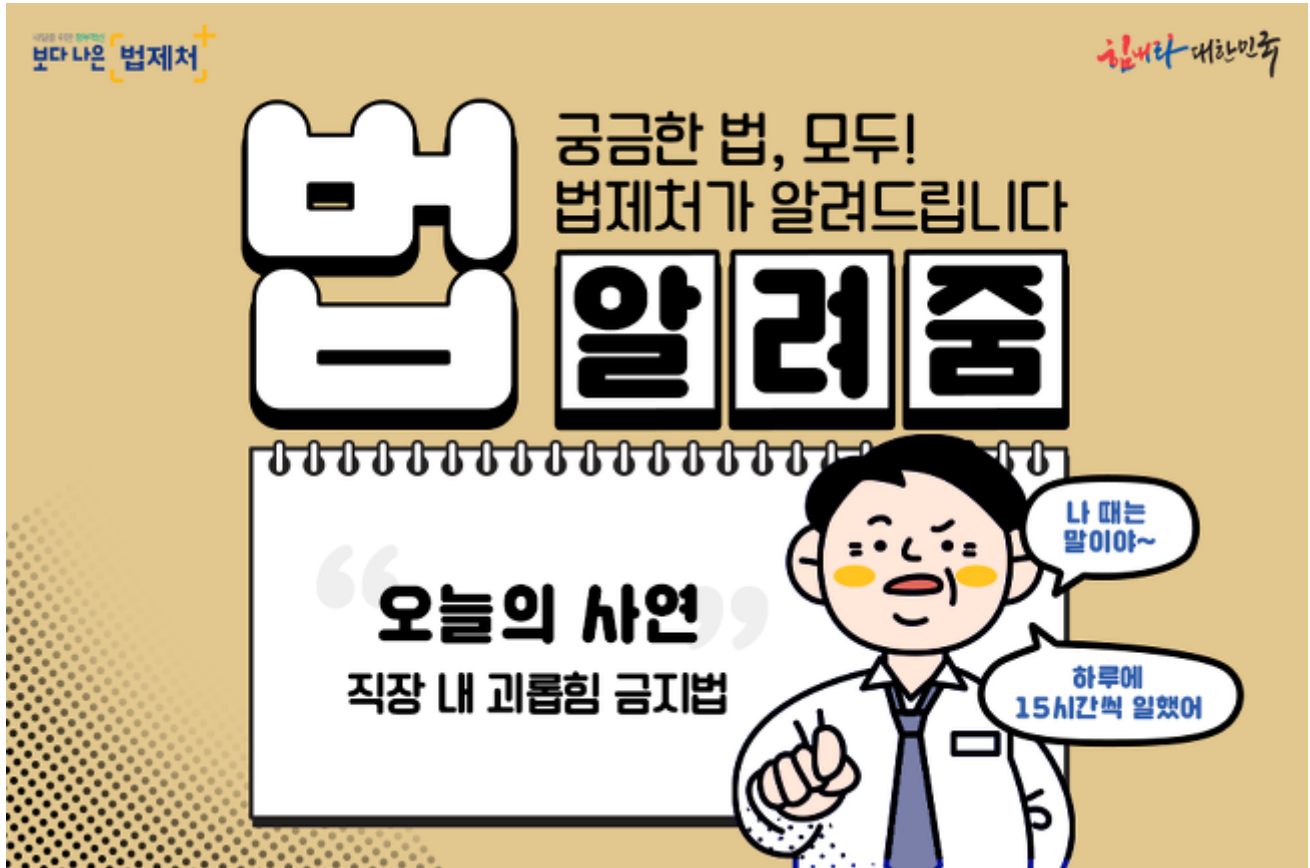
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, 법제처가 알려드립니다!



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

무심코 던진 말,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?!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

법제처와 함께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!

안녕하세요. 저는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.

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신입사원 환영 회식 날.

"다들 마시는데, 잔 안 들고 뭐하나? 까라면 까야지 신입사원이"

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.

앞으로 회식 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벌써 걱정되는데요.

이런 일도 직장 내 괴롭힘 알까요? 도와주세요! 법제처 운영자님



-FROM. 신입사원 김신입-

안녕하세요, 저는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.

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신입사원 환영 회식 날,

"다들 잘 마시는데, 잔 안 들고 뭐하나? 까라면 까야지, 신입사원이!"

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억지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.

앞으로 회식 날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벌써 걱정되는데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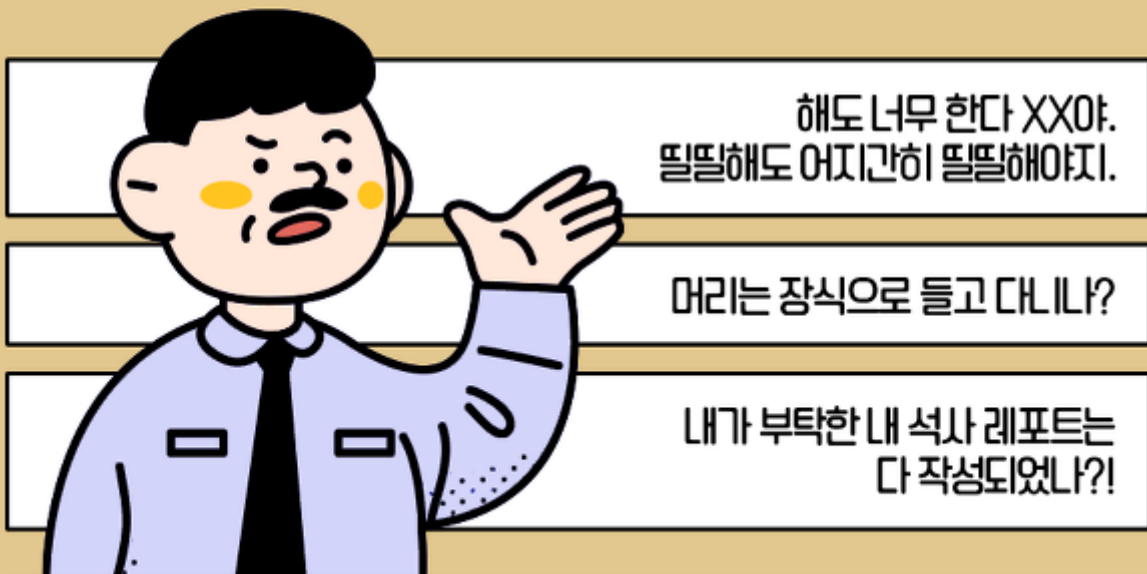
이런 일도 **직장 내 괴롭힘** 일까요?

도와주세요, 법제처 운영자님!

국민 4인 3명
보다 나은 법제처

힘내라 대한민국

직장 상사 폭언 사례



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 있다 73.3%

(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직장생활 경험자 20세~64세 1,50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)

우리 사회에 **10명 중 7명 정도의 근로자가**
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요.

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

직장생활 경험자 20~64세, 1,50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

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.3%였는데요.

우리 사회에 10명 중 7명 정도의 근로자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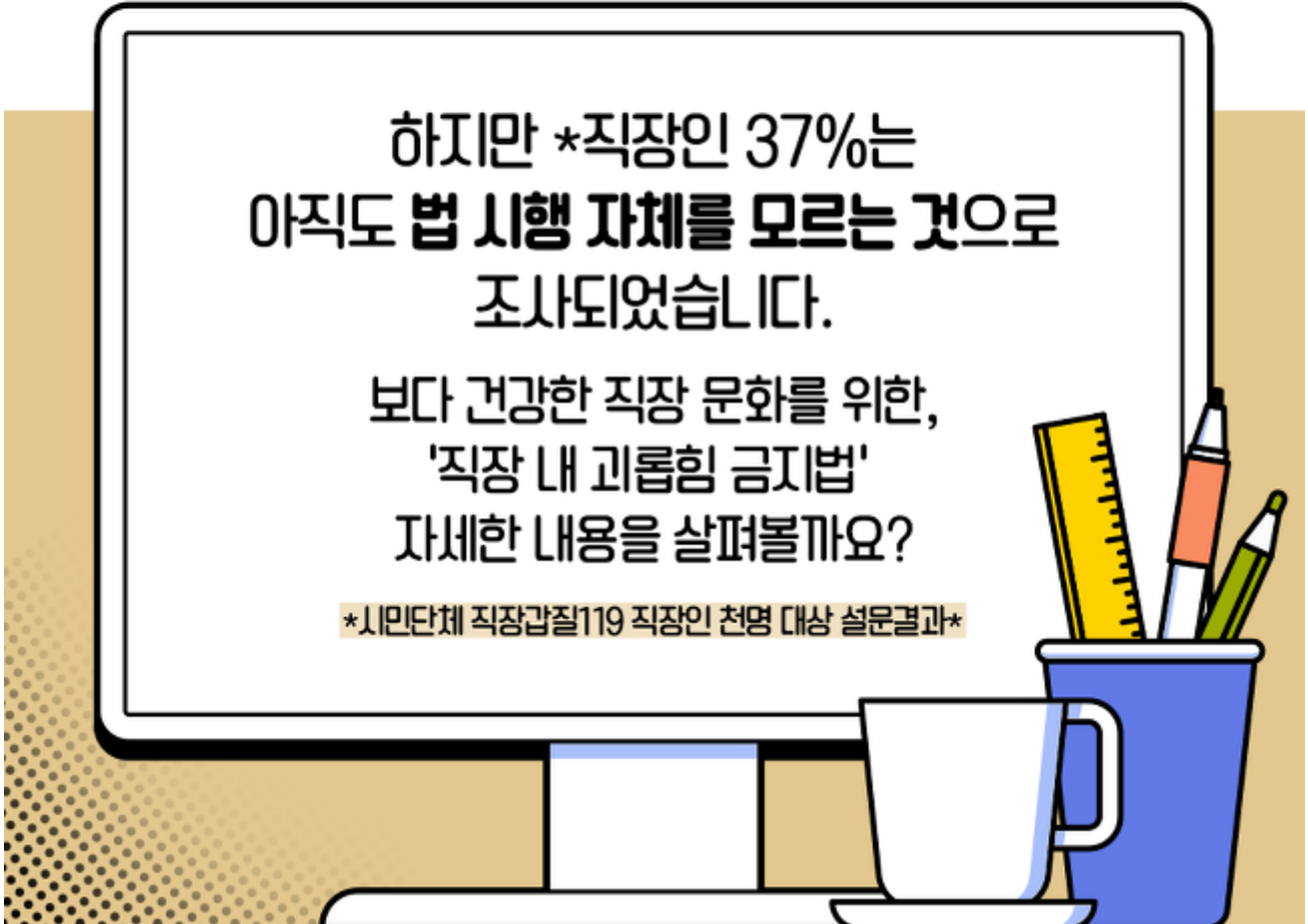
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.

그래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!

하지만 *직장인 37%는
아직도 법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
조사되었습니다.

보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한,
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
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?

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인 천명 대상 설문결과



이에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.

여전히 직장인 37%는 법 시행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.

보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한

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,

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?

직장 내 괴롭힘이란?

**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
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
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
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
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
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**
 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)



직장 내 괴롭힘이란?

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

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

신체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.

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)

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기준법>

가장 쉬운 법제도
 보다 나은 법제처

힘내라 대한민국

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?

종합적으로 판단 (구체적인 사정 참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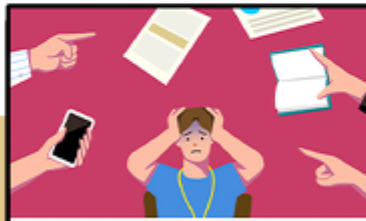
직장 내 괴롭힘은 '당사자 간의 관계, 행위가
 행해진 장소 및 상황'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
**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, SNS, 카카오톡 등
 온라인 공간 또한 포함됩니다.**

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
피해를 입은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것!!
 (※통화 녹취, 메일, 사진 등 증거로 인정)

직장 내 괴롭힘 사례



폭행, 협박,
지속/반복적인
폭언 등



근로계약서 등에
명시되어 있지 않는
허드렛일만 시키거나
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



의사와 상관없이
음주/흡연화식
참여를 강요함



집단 따돌림,
업무 수행과정에서의
의도적 배제/무시



신체적인
위협이나 폭력을
가하거나 욕설



정당한 이유 없이
업무 능력이나 성과를
인정하지 않거나 조롱

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

'당사자 간의 관계,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' 등

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업장 뿐만 아니라

사내 메신저, SNS,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 또한 포함됩니다.

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관한 취업규칙 작성 필수!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,
상시 10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
아래 내용을 반영 **취업규칙**을 작성해야 하세요.

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 11항

사내에서 금지되는
직장 내 괴롭힘 행위

직장 내 괴롭힘
예방 교육 관련 사항

사건 처리 절차

피해자 보호 조치

행위자 제재

재발방지 조치 등

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
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

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

상시 10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

아래 내용을 반영해 **취업규칙**을 작성해야 하세요.

(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 11항)

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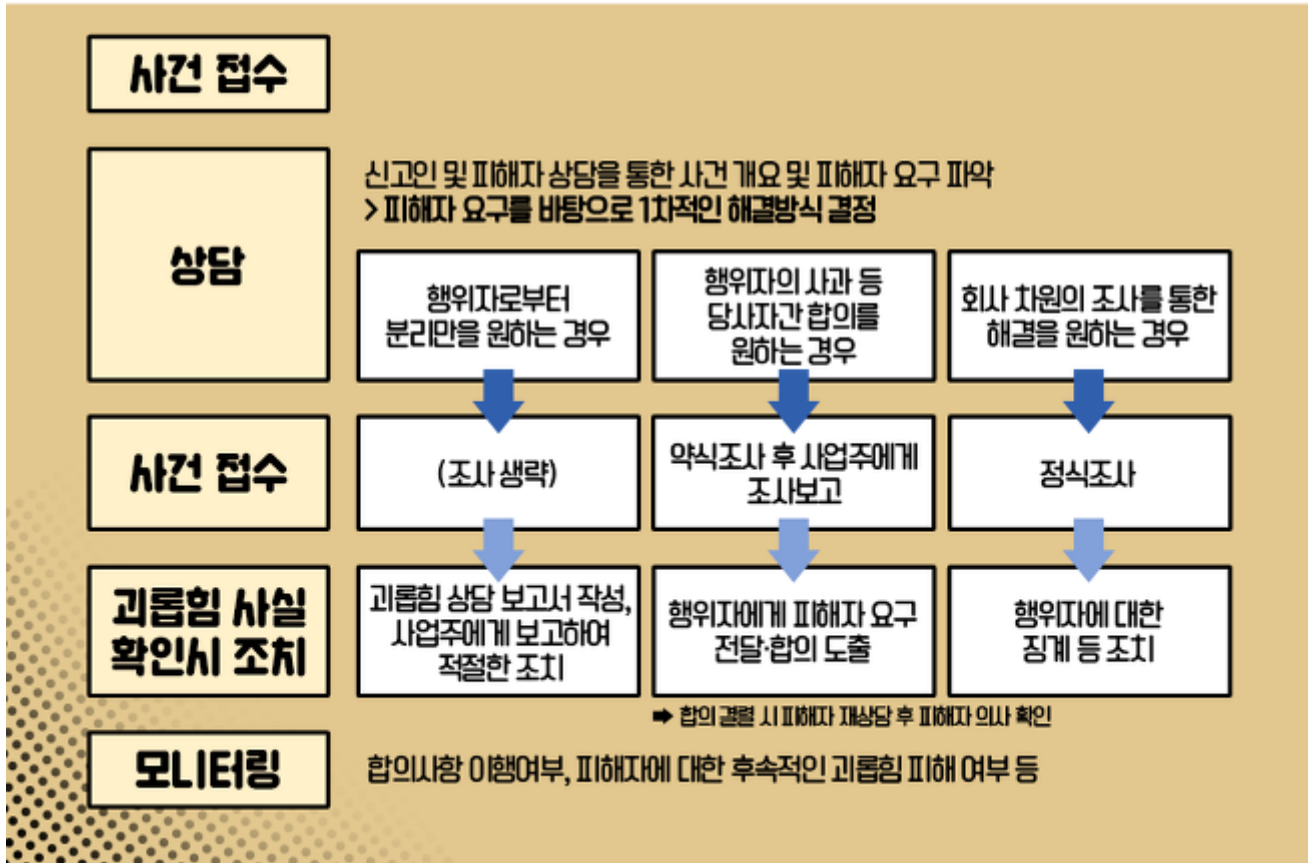
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(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)

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기준법>

직장 내 괴롭힘, 사업장 해결절차
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,
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
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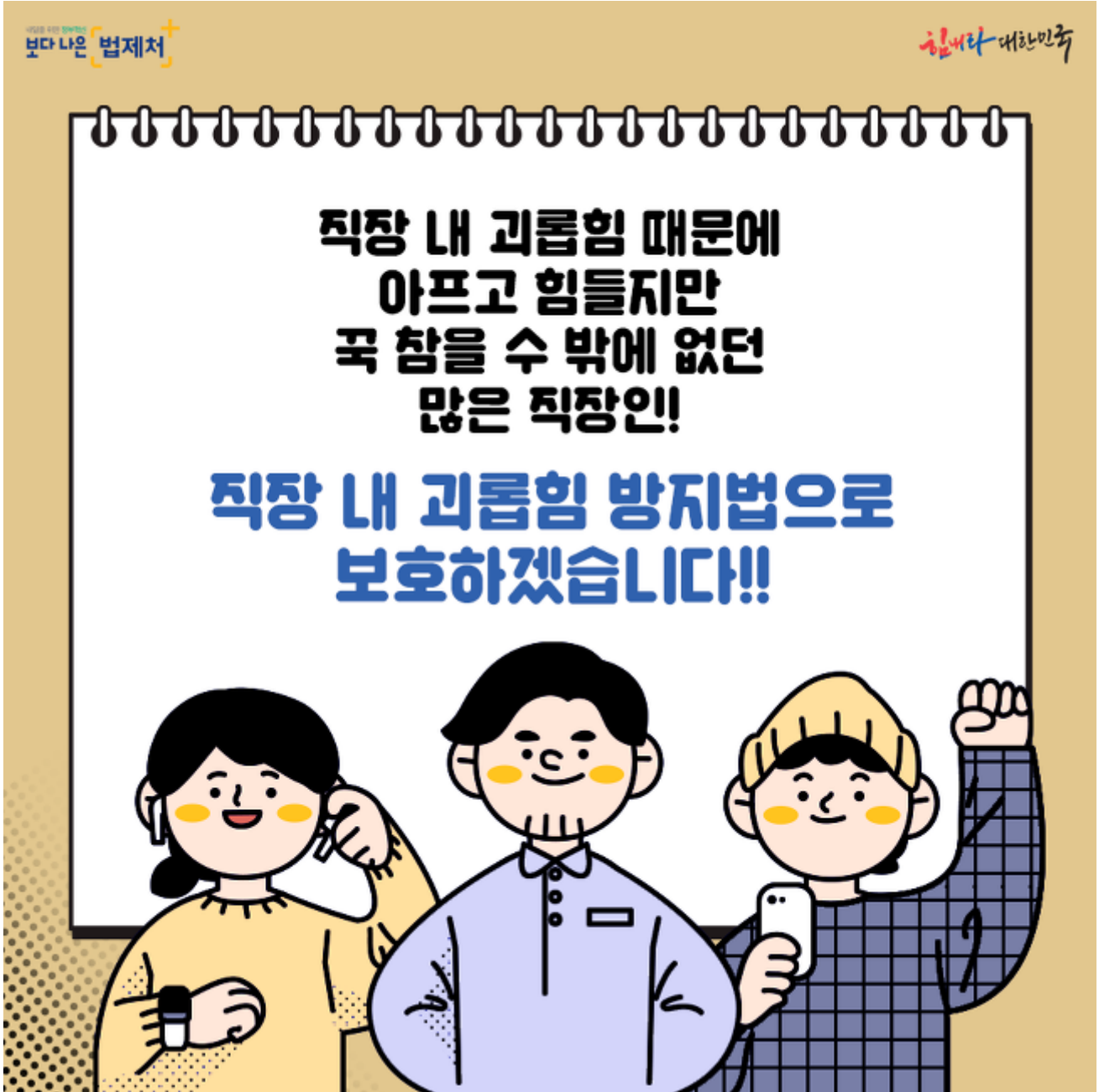


만약,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는

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고

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해결 절차는 위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!



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,

꼭 참을 수밖에 없던 많은 직장인!
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하겠습니다.

행정기본법

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!



법제처 홍보 플랫폼 여기로

재미있는 법령정보 여기로 오세요!



불편법령 신고센터

생활 속 불편했던 법령, 법제처에 신고해 주세요!



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

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!



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

재미있는 법령정보 여기로 오세요!



좋아요7

공유하기

글 요소

구독하기 법제처 공식 블로그

[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](#)

- [카카오스토리](#)
- [트위터](#)
- [페이스북](#)